##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

"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." 인권은 교육과 민주주의의 주춧돌입니다.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,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합니다.

번호		<ul> <li>※ 서명요령 아래 굵은 선 안을 채워주세요.</li> <li>1.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.</li> <li>2.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거나 인장을 날인합니다.</li> <li>3.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,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합니다.</li> </ul>				
성명		서명(정자) 혹은 날인				
<b>주소</b> (주민등록상)	서울특별시					
주민등록 번호	-	서명날짜	201	년	월	일
핸드폰/전화		이메일				

※ 연락처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조례개정 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 서명운동에만 사용됩니다.

	청구인의	대표자증명	병서			
성명	홍 세 화	주민등록번호	47			
주 소	서울특별시 마포 (전화번호 : 010-					
청구종류	□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(서울특별시 학생인권) 조례의 제정 청구					
서명요청기간	2010년 10월	27일부터 2011	년 4월 26일까지			
	자로서 위와 같이		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민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			
	2010	년 10월 27일				
	서 울 특	별시교육				

##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.

- ◆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비 학생 역시 존엄성과 권리의 주체임 을 확인
- ♣ 폭력 없는 교육 | 체벌, 괴롭힘, 언어폭력, 성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

- ★ 개성과 사생활이 존중되는 교육 | 두발·복장 등을 통한 개성 실현/ 자의적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/ 개인정보 보호
- ◆ **돌봄의 교육** ∥ 쉼, 안전, 건강, 안전한 먹을거리, 상담과 조력 등을 보장
- ◆ **인권을 상호존중하는 교육** ∥ 인권교육 확대/ 학교·교육청의 책임 명시/ 학생권리구제기구 설치

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, 학부모가 모두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!

##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www.sturightnow.net

(156-090)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-45 승지빌딩 8층 02-582-8884